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4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

## 4. 검토의견

금번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준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붙임 : 충청북도 지방세발전기금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